

의안번호	2202615
의 퇴 인	황명선의원
회 답 일	2024. 9. 9.
추계번호	24D259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의2(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종합계획) 신설 및 제15조의2(지역사랑상품권 이용 실태조사)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함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함	의무규정
2	안 제4조(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의무화	의무규정
3	안 제10조의2(가맹점에 대한 조세감면) 신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음	재량규정
4	안 제15조(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3조의2(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종합계획) 신설 및 제15조의2(지역사랑상품권 이용 실태조사)	- 현행법 제15조의3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어, 동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기 편성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세부사업’ 예산으로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는 실태조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안 제3조의2(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종합계획)과 안 제15조의2(지역사랑상품권 이용 실태조사)는 미대상 사유에 해당 - 행정안전부 소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세부사업’ 내에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제도 정착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을 위하여 2024년에 1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2	안 제4조(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제1항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안 제10조의2(가맹점에 대한 조세감면) 신설	
4	안 제15조(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Ⅲ. 미첨부 사유

가. 안 제4조(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 안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미발행 지방자치단체의 상품권 발행규모가 늘어나게 될 경우, 국비 및 지방비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2024년 기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수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190개(광역시 11개, 기초 179개)²⁾임
 -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1349-306)사업은 지역사랑상품권을 판매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판매액의 일부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발행규모가 늘어나게 되면 국비와 지방비 모두가 증가하게 되는 구조임
 -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은 한정된 예산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조사를 받아 지방자치단체별 재정력, 판매실적, 발행수요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며, 이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⁴⁾는 매년 달라짐

[표 1]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국비 지원 비율

구분	인구감소지역 ⁵⁾	일반자치단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서울, 성남, 화성)
할인율	할인율 10%	할인율 7~10%	할인율 자율
국비지원율	국비지원율 5% 지방비 부담 5%	국비지원율 2% 지방비 부담 5~8%	국비지원 없음

주: 제시된 할인율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할인율이며, 이외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지원 없이 자체 재원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할인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음

자료: 행정안전부

- 1) 현행법 제15조의3(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관련 연구사업)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생략)
- 2) [참고 1]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미발행 지방자치단체 현황
- 3) 미발행 광역지방자치단체(경기도, 충청북도 등)의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으며, 미발행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어, 사실상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음
- 4) 2020년 133,216억원, 2021년 235,871억원, 2022년 272,196억원, 2023년 209,418억원
- 5) 인구감소지역 지정 변경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4-15호)에 따라 지정된 89곳의 지방자치단체임

- 따라서 개정안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미발행 지방자치단체⁶⁾가 발행하게 될 상품권 규모를 예측하기가 어려우므로 추가재정소요의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함

나. 안 제10조의2(가맹점에 대한 조세감면) 신설

- 안 제10조의2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⁷⁾의 연매출액 등에 관한 자료가 부재하고, 개정안에서 조세 감면 사항이 구체화되지 않아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재정 수입 감소액을 산출하기가 곤란함

다. 안 제15조(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 현행법 제15조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 편성액을 기준으로 국비 지원액은 2018년 100억원에서 2021년 1조 2,522억원으로 증가하였다가 2024년 3,000억원으로 감소하였음

6) 53개 지방자치단체(광역시 6개, 기초47개)

7) 2023년 기준 266만개 가맹점

8) 현행법 제15조(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표 2]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재정지원 현황

(단위: 개, 억원)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발행 지자체 수 (국비 지원 지자체 수)	66 (4)	172 (144)	185 (154)	187 (184)	188 (181)	190 (157)	190 (153)
예산(국비)	100	884	6,690	12,522	8,050	3,522	3,000

주: 지방비 예산 규모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음

자료: 행정안전부

- 안 제15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요청 규모 등에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현 시점에서 개정안 시행 이후의 재정지원 요청을 할 지방자치단체의 수,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지원 요청 규모 등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지수현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지수현	02-6788-4831	zisu37@nabo.go.kr

[참고 1]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미발행 지자체 현황

□ 2024년 기준 190개 지자체 발행 중

- (광역) 17개 시·도 중 11개 시도가 발행 중(6개 시·도 미발행)
- (기초) 226개 시·군·구 중 179개 시·군·구가 발행(47곳은 미발행)

구분	발행 지자체	미발행 지자체
합계	190개(광역 11개, 기초 179개)	53개(광역 6개, 기초 47개)
서울	서울특별시(광역), 25개 자치구	
부산	부산광역시(광역), 동구, 남구	중구, 서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대구	대구광역시(광역)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군위군
인천	인천광역시(광역), 동구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광주	광주광역시(광역)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	대전광역시(광역), 대덕구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울산	울산광역시(광역)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세종	세종특별자치시(광역)	
경기	수원, 용인, 고양, 성남, 화성, 부천, 남양주, 안산, 평택, 안양, 시흥, 김포, 파주, 의정부, 광주, 광명, 하남, 군포, 오산, 양주, 이천, 구리,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파천, 가평, 연천	경기(광역)
강원	강원특별자치도(광역),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충북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충북(광역)
충남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충남(광역)
전북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전북(광역)
전남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완도, 진도, 신안	전남(광역)
경북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문경, 경산,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예천, 봉화, 울진, 울릉	경북(광역)
경남	경상남도(광역),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함천	
제주	제주도(광역)	